

March 06, 2020

Legal Update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9. 6.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의체인 FATF에서 회원국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에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가상자산 거래 규제 필요성을 반영하여 그 동안 국회에 여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고, 2019. 11.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리된 개정안을 의결한 후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및 금융거래 등에 가상자산거래가 포함됨을 명시

기존에 국내법상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그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거래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이나 토큰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면서, 다만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결과물, 기타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 제3호).
-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타 가상자산과 교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관리, 상기 행위의 중개/알선/대행,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개정법 제2조 제1호 하목)한 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부분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규제를 받는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 제2호 라목).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인 경우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확인의무 및 거래 거절/종료 의무 규정

금융회사등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일정한 고객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고객확인 의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본건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 의무에 추가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관련하여 거래 거절/종료 사유도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인 경우 추가 확인 사항: (i) 개정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여부, 그 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여부, (ii) 예치금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여부, (i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 획득 여부(개정법 제5조의 2 제1항 제3호)

-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인 경우 추가 거래 거절/종료 사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 미이행, 미수리, 직권말소 확인,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항(개정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

특정금융정보법의 역외적용

개정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6조 제2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수리 거부

개정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그 변경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ISMS 미획득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은 자(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예외가 있음)
- 개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
- 금융분석위원장에 의해 직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직권 말소/업무 정지 등

개정법은 일정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7조 제4항).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권 말소 사유]

- 개정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영업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업무 정지 사유]

- 개정법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시정명령 미이행
- 개정법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3회 이상의 기관경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개정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개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개정법 제5조의2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적용합니다.
-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확인 의무(개정법 제5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법의 통과로, 한국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광범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개정법의 통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ISMS 인증과 실명계좌의 사용이 필수가 되어 여러 영세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이제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양질의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 가상자산 사업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기대가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많은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앞으로 시행일까지 마련될 개정법을 위한 시행령의 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그룹(Digital Technology & Data Law PG)은 블록체인, 핀테크, 인공지능, 데이터 독점 등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 02-316-1624
✉ jhcho@shinkim.com



오재청
소속변호사

☎ 02-316-1782
✉ jcoh@shinkim.com



정해성
소속변호사

☎ 02-316-4469
✉ hsujeo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